**customer / user ‘s (song writer’s) requirements**

1-0.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이 저작권이 지켜져 악의적인 표절로부터 보호받고 싶다.

1-1. 자신이 등록한 음원의 저작권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. (저작자의 저작권이 악의적으로 변경되면 안된다.)

2-0. 자신의 음원을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, 자신의 창작물이 기존에 있는 음원들과 어느정도 유사한지 궁금하다.

2-1. 검증을 할 때 전체적인 느낌도 판단해서 지표를 산출 했음 좋겠다. **2-1-\***

2-1-1. 다만 이 지표는 음악 전문가와 일반 청취자들을 구별해서 판단하여 전문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.

2-1-2. 장르와 클리셰를 염두에 두고 코드의 진행 방식과 같은 요소로 판단해야한다.

2-1-2-ex. swing장르 아이유 분홍신 vs nekta here’s us 일반인이 듣기엔 곡이 비슷하나 전문가가 들을때는 다를 수 있다.

2-2. 패러디와 구별이 되어야 한다. **2-2-\***

2-3. 표절로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떤 음원과 유사한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.

2-4. 표절 검증이 빠르고 정확해야한다.

3-0. 자신의 창작물을 포함하여 등록된 음원들을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. (스트리밍과는 별개)

3-1 악의적인 표절을 한 음원도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저작권 침해를 한 창작자를 알 수 있어야 한다.

**2-1-\***

“표절”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**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**하며,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([한국저작권위원회,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](https://counsel.copyright.or.kr/autoCounsel/autoCounselDetail.srv?use_form_type=all&searchTarget=all&searchWord=%25ED%2591%259C%25EC%25A0%2588&category_seq=19&category_type=001&page=1&counsel_seq=105&quest_seq=709&answer_seq=0)).

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, **일반적으로 가락, 리듬,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**이 됩니다. **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,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**합니다.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,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, ② 기존의 저작물에 ‘의거’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,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.

**2-2-\***

패러디(Parody)”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,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,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. 패러디는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, **유명한 원작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적 모방을 한다는 점에서 원작을 몰래 모방하는 표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.**

패러디가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작품의 비평, 풍자를 위한 모방은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, 또한 새로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 [「저작권법」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&lsNm=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&joNo=&languageType=KO&paras=1)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

[「저작권법」 제28조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&joNo=0028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에서 “공표된 저작물은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는 것을 패러디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 [「저작권법」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&lsNm=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&joNo=&languageType=KO&paras=1)상 적법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① 비평 목적이 있어야 하며, ② 정당한 범위 안에서, ③ 공정한 관행에 따라 원작을 이용해야 합니다.

        우리 법원도 “컴백홈” 사건에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([서울고등법원 2010.10.13. 선고. 2010나35260](http://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10%EB%82%9835260)) 판결).

법적인 (법과 관련한) documentation 필요해보임.

**User Story requirements가 낳을까 않이면 IEEE-830 style requirements가 낳을까?**